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53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제220455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 예외 규정 마련(안 제1조 및 제58조제3항 단서 신설)	3

I. 김소회의원 대표발의(제220455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소회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 2024. 10. 4.

다. 회 부 일 : 2024. 10.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그 허가의 기준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8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검토의견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 예외 규정 마련 등(안 제1조 및 제58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u>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기후위기 대응 및 국민의 삶의 질</u>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다만,</u>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그 허가의 기준은 같은 법 제27조의3에 따른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는 군수가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²⁾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기후위기 대응을 추가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³⁾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은 같은 법 제27조의3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임.

【지자체별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현황】

(단위: 개 지자체)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규제중 (전체 지자체 수)	17 (18)	11 (31)	15 (18)	20 (22)	0 (5)	2 (9)	0 (5)	0 (16)	0 (25)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전체
	0 (1)	0 (5)	1 (10)	22 (22)	14 (14)	1 (1)	15 (15)	11 (11)	129 (22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9, 김소희 의원 등 18인)

제27조의3(이격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수준】

(단위: 개 지자체)

구 분		태양광	
		도로	주거
이격거리 범위	100m 이내	22	11
	100m ~ 300m	58	57
	300m ~ 500m	42	59
	500m ~ 1,000m	5	1
	1,000m ~ 2,000m	0	0
	기타	2	1
	합 계	12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과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은 김소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⁵⁾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1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